

우: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[<http://www.kma.org>]/전화(02)6350-6536 전송(02)793-8702  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은혜(6540)/ 팀원 조시형(6536)/ E-mail: kmamedi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-12041호

시행일자 2025. 2. 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11호) 공포  
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1014(2025. 2. 6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#1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프로포폴(Propofol)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11호)이 2025.2.6.일자로 공포

4. 아울러,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2025. 1. 24.일자로 안내문(대의협 제0625-11687호, 붙임#2)을 배포하였는 바, 이를 함께 송부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붙임 :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2011호) 각 1부.

2.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(셀프처방) 관련 대회원 안내문(대한의사협회\_20250124)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
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  
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